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①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영 제7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말한다) 사본

② 평생교육이용권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재충전 신청 절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 ① 영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 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25호 서식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
2. 출결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방문형·자습형 프로그램
3. 기타 평생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경 운영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사용기관 등록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① 사용기관은 이용권자가 이용권을 사용한 날(전자결제가 일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권 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좌명, 비용, 수료기준 등을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이용권자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권자의 수료 여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 이수 또는 학습진도의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한 경우
2. 사용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수료 기준 이상인 경우
- ③ 사용기관은 이용자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출결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은 이용권자의 출석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와 비용에 관한 자료를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이용권자에게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기관 등록을 한 경우
2. 이용권자 등과 담합하거나 그 밖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한 경우
3. 이용권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료(교재비를 포함한다)를 과다 청구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거나 출결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관리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사용기관 등록 취소의 사유에 사용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용권 운영 중지 처분으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른 사용기관 등록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종료일까지 교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사용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 사용기관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사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설치자는 사용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사용기관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제28조(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등) 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및 환수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5제6항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사기간과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조사내용과 제출자료
4.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용)

항 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의 합계액 (상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선정 ·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항 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u>회원탈퇴 시</u>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신청 · 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항 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의 합계액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선정 ·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상세 안내				
1. 조사 대상자 : 기타 유형 신청자 본인 및 직계 존속, 배우자 2. 조사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소득인정액 조회 3. 소득인정액 산출 항목 - 소득 : 상시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제 과세정보 등),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사업자등록정보,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소득세정보 등) - 재산 : 지방세 과세정보 (재산세, 취득세), 지적(토지), 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임차보증금, 자동차 (차적정보, 자동차사내법포조금,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등) 4.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본 고지내용을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민감정보를 포함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 여부	서명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NH농협카드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성명,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여부	목적달성시 까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u>주민등록번호</u>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각 프로그램별 세부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	수수료 없 음
	2. 강좌별 이수 기준이 출석을 80% 여부가 아닌 기관 별도 자체 규정에 따라 이수 여부를 보고할 경우 해당 자체 규정 필수 제출(해당되는 기관에 한해 제출함)	

작성방법

-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규와 변경 중 해당되는 [] 란에 체크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 이외 모든 영역 빠짐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 [강좌 분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중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 적습니다.
- [교육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출석), 혼합형(온/오프라인), 기타 중 강좌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 적습니다.
- [총 교육일수/ 총 교육시간]은 일수와 시간 중 선택해서 한 가지만 적고 숫자 뒤 해당하는 '일' 또는 '시간' 을 함께 기재합니다.
- [(회당)교육시간]은 1회당 교육시간이며 소수점 이하는 생략합니다.
- [이수 기준]은 평생교육이용권 기본 규정인 출석을 80% 또는 자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자체 규정에 따라 이수 여부를 보고 할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는 원 단위로 작성해야 하며, 별도 교재비·재료비가 없는 경우 공란 또는 '없음' 으로 하고 두 항목 모두 있을 경우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강좌 수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표 일부에 대해 줄 추가 및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날 짜 및 신청인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
 - 출결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방문형·자습형 프로그램
 - 기타 평생교육이용권 및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없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등록된 사항 및 강좌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 서식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경]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관에서 제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의 강좌 정보는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이용자 대상으로 공개되므로, 유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	-----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정보

기 관 명	기 관 대 표 자 명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변경 신청 내용

변경 내용	[] 기관 시설 인가 변경에 관한 사항(기관 근거 법령, 설립 구분, 기관 구분 등)	
	[] 사업자 등록 및 단말기 가맹점 변경에 관한 사항	
	[] 기 타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사용기관 대표자) _____년 ____월 ____일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변경 사항에는 변경 내용의 체크한 영역을 기입하고, 변경 전과 후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기관 등록 변경 사항이 다수일 경우 변경 사유 각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취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	-----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정보

기	관	명		기	관	대	표	자	명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취소 내용

등록 취소 유형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기준 상실 [] 휴폐업신고 및 사업등록 말소 [] 기타 ()
등록 취소 사유	
사전 확인 사항	①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사용기관 등록 취소 사실을 고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학습비 반환처리를 완료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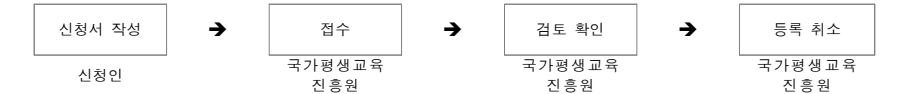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휴폐업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서류 2. 기타 등록 취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정보는 빠짐없이 작성하며, 사용기관 등록 취소 란에는 등록 취소 유형 및 사전 확인 사항을 체크한 후, 사용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취소 전, 사전 확인사항을 점검후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 등록 취소 통지서
[] 운영 중지

사용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지 내용	등록취소	년 월 일		
	운영중지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사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 [] 등록 취소 [] 운영 중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평생교육이용권

[] 회수

[] 환수

통지서

대상자 (이용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 금액	원
사유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기관	

「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회수(또는 환수)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부정행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	------	-------	-----

■ 신고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피신고인

성명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신고내용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에 작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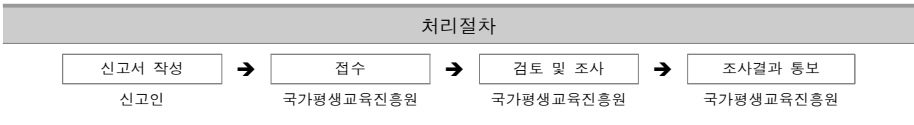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없음
-------------	-------------------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①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영 제7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말한다) 사본 ② 평생교육이용권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재충전 신청 절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제25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 ① 영 제7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 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25호 서식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신청 할 수 없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

2. 출결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방문형·자습형 프로그램

3. 기타 평생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③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경 운영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사용기관 등록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① 사용기관은 이용권자가 이용권을 사용한 날(전자결제일이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권 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좌명, 비용, 수료기준 등을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이용권자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권자의 수료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 일수 또는 학습진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

2. 사용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수료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사용기관은 이용자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출결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은 이용권자의 출석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와 비용에 관한 자료를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신 설>

제27조(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이용권자에게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기관 등록을 한 경우

2. 이용권자 등과 담합하거나 그 밖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한 경우

3. 이용권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료(교재비를 포함한다)를 과다 청구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정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거나 출결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관리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사용기관 등록 취소의 사유에 사용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용권 운영 중지 처분으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른 사용기관 등록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종료일까지 교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사용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 사용기관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사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영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설치자는 사용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사용기관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신 설>

제28조(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등) 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의 회수 및 환수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5제6항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지도·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사기간과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조사내용과 제출자료
	4.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제25조 (생략)	제30조·제31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203-6381